#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**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**

2009. 10

보건복지가족부, 노동부, 교육과학기술부, 문화체육관광부, 식품의약품안전청, 중소기업청,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

# 목 차

I. 추진배경 ······1
Ⅱ. 뷰티 산업 현 좌표2
1. 뷰티 산업 현황2
2. 뷰티 산업의 문제점5
3. 외국의 산업 진흥 사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Ⅲ. 뷰티 산업 선진화 방안10
1. 국내산업기반 재정비11
2. 관광수출 상품으로 전략적 육성17
IV. <b>기대会과20</b>
V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
# Ⅰ. 추진 배경

- ◇ 뷰티산업은 웰빙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분야
- ◇ 뷰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내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 수출산업으로도 육성
- ① **[성장잠재력]** 웰빙·감성소비 등으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신성장 산업
  - '07년 매출액은 약 4조 586억원\* 규모로 최근 3년간 19% 성장
    - \* 헤어미용 3조 5,386억원, 피부 미용 4,197억원, 네일 등 기타 : 1,002억원 ('07년, 통계청)
    - 우수한 기술, 한류 등에 힘입어 새로운 "관광·수출 컨텐츠"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
    - \* '07년 한국방문 일본 관광객 21.2%가 미용 서비스 이용(한국문화관광연구원)
    - 높은 성장 전망 등으로 대학 등 관련학과 개설도 활성화
    - \* 고등학교 22개, 대학 98개, 대학교 25개 등 202개교('09년 보건사회연구원)
  -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
     내수 기반 확충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
    - \* 여성 종사자 비율 : 미용 80%, 피부미용 93%('07년, 보건산업진흥원)
- ② [체계적 산업 육성 미비] 세탁, 목욕장 등과 함께 "공중위생 영업" 으로 관리,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·방향 제시 부재
  - 시장 규모 확대가 **영세사업자 진입 등 양적확대 위주로 진행**됨에 따라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**해외브랜드에 비해 경쟁력 미흡** 
    - \* 쟈크 데상쥬(23개소) 등 17개 이상의 해외브랜드 국내 진출('07년, 보건산업진흥원)

# Ⅱ. 뷰티 산업 현 좌표

## 1 뷰티 산업 현황

#### [1] 뷰티산업 개요

#### 1 개념 및 범위

- (개념)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산업('07년, 한국보건산업진홍원)
- (범위) 헤어미용·피부미용·네일아트·메이크업 등 서비스업과 그와 관련된 미용기기·용품 등 제조업 포괄
  - \* 화장품, 성형, 패션·의류, 스파 등(광의의 뷰티산업) 이미 제도 개선 중이거나 발전 방안 모색중인 분야 제외

#### <뷰티 산업 현황>



부분은 별도 자격체계가 없는 부분

#### 2 뷰티서비스 자격 체계

- **미용**(종합), **미용**(일반), **미용(피부**) 등 3종 ('08년 이전까지는 1종(미용))
  - \* 면허 종류는 종전 1종 ➡ 3종('08년부터)으로 변경, 네일아트, 메이크업 등은 별도 자격없이 미용(종합, 일반) 면허 소지자만 영업 가능

- 면허(복지부)와 자격(노동부)이 분리된 이중적 구조
  - 고등학교, 대학, 대학교 등 졸업자 : 무시험, 미용(종합) 면허 부여
  - 국가 기술 자격시험 합격자 : 자격시험 종류에 따라 미용(일반), 미용(피부) 등 개별 자격증 부여
  - \* 사업장 개설 등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교환 필요

#### (2) 뷰티산업 현황

- ① [취약한 영세산업] 영세 자영업 위주,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산업 경쟁력은 취약
  - 사업체의 97%이상이 4인 이하 영세기업('07년 통계청)

<산업 규모별 기업 분포 현황(개소)>

구분	영세기업 (1-4인)	소기업 (5-9인)	중기업 (10-49인)	대기업 (50인 이상)	소계
뷰티서비스	102,525(97.39%)	2,193(2.08%)	643(0.61%)	7(0.006%)	105,269
서비스 전체	664,306(79.8%)	85,073(10.2%)	74,934(9.0%)	8,027(1.0%)	832,340

- \* '07년 서비스업 총조사, 통계청
  - 노동생산성도 낮고 생산성증가도 정체
  - \* 노동 생산성의 경우, 1인당 매출액은 22백만원으로 서비스산업 평균 134 백만원의 1/6에 불과('05년 통계청)
  - \* 서비스 생산지수의 경우, 뷰티서비스는 116.7로 서비스 전체 평균 125에 미달 ('08년 통계청)



- ② **(산업내 양극화 심화)**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**규모화·대형화**가 진행 되고 미용 프랜차이즈가 확대되면서 규모별 격차 확대
  - 전체 미용실 81천여개중 미용 프랜차이즈는 1.3%에 불과하나 시장 점유율은 24%를 차지('06년 M&C 리서치)
  - 연매출 1억미만 사업체당 영업 이익은 16백만원으로 서비스업 평균(57백만원)의 1/4에 불과한 수준
    - 반면 연매출 1억 이상 사업체의 경우 178백만원으로 서비스업 평균의 3배에 달함('05년, 통계청)
- ③ [대형브랜드 해외진출] 일부 대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증가
  - '08년 해외 진출 신규 법인수는 122개, 투자 금액은 2,539만\$ 규모 (KOTRA, 한국수출입은행)
    - \* 주로 중국에 진출, 최근에는 미국・필리핀 등으로 다변화 추세

<주요 뷰티서비스 기업 해외진출현황>

구분	브랜드 명	진출 국가	점포수
	이가자 헤어비스	중국, 호주	45개소
	리치	중국	30개소
~11 .1 .1 A	박준뷰티랩	중국	15개소
헤어미용 (110개소)	미랑컬	중국,호주	5개소
(110/11-1)	리안헤어	중국,미국	5개소
	박승철헤어스투디오	중국,미국	7개소
	이철헤어커커	중국,필리핀	3개소
피부 미용	이지은 레드클럽	중국	10개소
(11개소)	미플	중국	1개소
 네일아트	세시네일	중국, 미국	12개소
(30개소)	그라시아	-	18개소

<sup>\*</sup> 협회 자료('08년), 보건산업진흥원('07년), 보건사회연구원('09) 등 자료 참고

#### 2 부티 산업의 문제점

- ◇ "공중 위생 대상"으로만 인식,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・ 제도 확충이나 전후방 지원은 미흡
- ◇ 수출・관광자원으로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, 체계적 개발은 부진
- ① (법·제도 측면)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·제도 운영
  - 미용기기 분류·관리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 미비로 일부 **미용** 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용에 제한
    - \* 의료기기로 분류된 미용기기를 사용할 경우 형벌(1년이하 징역, 1천만원이하 벌금), 과태료(50만원), 행정처분(최대 영업장 폐쇄)
  - 국민건강과 직접관련 없는 **경미한 위반 사항에도 과도한 처벌 부과** 
    - 면허증, 영업 신고증 미게시 등 단순 영업 질서 위반시 **과대료** 및 행정처분 등 이중 부과
    - \* 300만원 이하 과태료, 위생지도 및 개선 명령 ⇨ 불이행시 영업장 폐쇄 등
    - 대표자 성명, 영업장 소재지 등 영업 신고 변경사항 신고 의무 미준수시 벌금·징역형 등 형벌 부과
    - \*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
  - 위생안전 위주의 형식적 평가 제도 운영, 교육 시스템 정비 미비 등
    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불합리한 제도 존재
    - \* 피부미용 학원이 헤어 미용 장비(예 : 헤어 드라이어기)를 갖추어야 개설 가능

- ② [정책지원 시스템] 창업은 용이한 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워 시스템 미비로 산업의 영세화·양극화 유발
  - 그간 뷰티서비스는 창업시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, 정책 지워도 자영업 창업 위주로 진행

<영세 자영업 창업자금·창업지원현황>

사업명	지원대상	지원한도	<b>′09년</b> 예산(억원)	소관 부처
소상공인 창업및 경영개선자금	5인미만 업체, 창업 및 경영 개선	5천만원	5,000	중소기업청
실업자창업지원	장기실업자, 여성가장, 실직고령자(55세 이상)	7천만원	100	노동부
저소득층생업 자금 융자	소득 최저생계비 150%이하	무보증12백만원 보증 5천만원	72	복지부
자활공동체 창업 자금 지원	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	개인 2천만원 지활공동체 1억원	330	복지부
장애인자립 자금융자	소득 최저생계비 200% 이하 18세이상 장애인 본인	무보증 1,200만원 보증 2,000만원 담보는 범위내	160	복지부

- 반면 대규모 창업이나 산업의 규모화·고도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워은 부재
  -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융자 등 정책 지원대상 에서 제외
  - 영세 자영업자의 규모 확대나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지원체계 미비
- 경쟁력 있는 기업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더딘 성장
  - 경쟁력 약한 기업은 "실패 → 재창업"의 악순환 지속
  - \* 미용업소의 50%이상이 취약한 경쟁력 등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 □ 산업의 영세화, 양극화가 심화('09년, 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- ③ [인력 양성] 면허(자격) 취득은 용이하나, 국내 자격취득 과정이 글로벌 수준에 미흡하고, 취업·재교육 등 사후관리 시스템도 미비
  - 미용 관련 학교 졸업자(연간 약 27천명)의 경우 전공·능력 등을 고려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시험 면허 부여
    - \* 피부미용과정을 이수하고도 헤어 미용을 할 수 있는 면허 부여
    - 선진국의 경우 면허 취득 요건으로 일정 기간 이상 교육·실습 의무 등 부과하는 등 면허 취득 요건을 엄격히 규정

<주요 선진국	미용관련	자격시험	제도	현황>
---------	------	------	----	-----

구분	미용사	피부미용사
한국	응시요건 없음	응시요건 없음
미국 (캘리포니아)	17세이상, 인가한 미용학교 에서 1,600시간 교육 이수	600시간 이상 실습 및 기술 교육 이수
일본	지정된 양성시설에서 2,000 시간 교육 이수	미술 기술학교 1년 과정 수료후 1년 현장 실습

-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미비로 배출된 인력이 현장 수요로
  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
  - 현장에서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면허(자격)소지자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
-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**재교육 시스템도 미비** 
  - 우수 미용 기술 습득을 위해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외국학교에 유학하는 사례 유발
  - \*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비달사순(영국) : 1인당 3일 기준 700만원 이상 지불

- 4 (수출·관광 자원화 전략)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전략적 접근 부재
  - **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써 높은 잠재력을 보유**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**체계적 개발은 부진** 
    - \* 미용 서비스 이용 관광객은 '05년 12.8% → '08년 6.3%로 감소 추세('09년 한국관광공사)
    - 경치·역사적 자원 등 "하드웨어 중심"에서 체험·서비스 등 "소프트웨어 중심"으로 관광 패러다임 전환 필요
- 동남아, 중국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도 증가 하고 있으나 지원은 미비
  - 해외 진출 기업은 관련 시장 정보 부재, 초기 시장 개척 어려움 등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이 지연

#### 시 사 점

- ◇ 뷰티 산업은 산업 성장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도 불구,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・제도적 인프라나 지원체계는 미비
  - 현 상황 지속시 산업의 영세화·양극화 심화,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 확대 등으로 산업 구조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 내재
- ◇ 뷰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 전반의 선진화, 글로벌화 필요
  - ① 국내 산업 기반을 재정비 ⇨ 내수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
  - ② 뷰티서비스를 **관광·수출 상품으로** positioning □ 글로벌 브랜드 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

#### 3 외국의 산업진흥 사례

- ◇ 외국의 경우 뷰티산업을 성장 가능성, 고용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인식
- 전담 지원 조직 확충, 품질인증 도입 등 제도 선진화,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

#### 영국

- ◆ 스포츠·레저, 관광, 미디어 등과 함께 **경제 파급효과가** 큰 14개 직업군의 하나로 분류·육성
  - HABIA(Hairdressing and Beauty Industy Authority)를 통한 one-stop 지원 시스템 확충
    - \*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런, 교육, 컨설팅, 금융 지원 연계, 신기술 개발 등
  - '15년까지 모든 고등학교/대학교 직업교육 학점이수 과정에 자격 취득 과정을 신설 추진

# 중국

- ◆ 부동산, 자동차, 관광, 통신 등과 함께 **5대 신흥 산업** 으로 분류, 상무성을 중심으로 본격 육성 추진
  - \* 중국 미용서비스 시장은 '06년 기준 약 26조원(2,200억위앤) 규모로 지난 3년간 연평균 32%의 고성장 지속
  - 뷰티 서비스에 호텔에 적용하는 스타등급제 도입, 서비스 질 제고
- 영업 준칙 제정 등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

#### 일본

- ◆ 체계적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정책 지원 시스템 재 정비 추진('09년)
- 융자 제도 확충 등 금융 지원책 강화
- 업계 경영 지원책 강구,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 진흥 지침 개정 등 제도 정비
- \* '09년 중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, 발표 예정

### 미국

- ◆ 규모화·고도화가 상당히 진전 → 높은 경쟁력 보유
  - \* 32만 5천여개의 마용실 중 프랜차이즈 바율이 87% 차지(109년, 한국보건사회연구원)
- ◆ 세액공제 및 직업교육시 보조금 지원 등 추진(\*08)

# Ⅲ. 뷰티 산업 선진화 방안

목표

내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"고급산업"으로 육성

정책 방향



정책 과제

#### □ 국내 산업기반 정비(Inbound 전략)

- ① 법ㆍ제도 정비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
- ② 뷰티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시스템 강화
- ③ 질 높은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강화

#### ② 관광/수출 상품으로 육성(Outbound 전략)

- ④ 고수익 관광상품으로의 육성
- ⑤ 뷰티서비스 기업 · 인력의 해외 진출 활성화

#### 1 국내 산업 기반 정비 (Inbound 전략)

#### [1] 법·제도 정비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

- ◇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·제도를 정비
  - ⇒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산업화 촉진
- ① (미용기기 제도 정비) 미용기기에 대한 합리적 관리 체계 구축
  - o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, 미용 기기 제도 신설('09년)
    - \* 미용 기기 범위, 분류 기준 및 관리 시스템 등 가이드라인 마련
    - \* 일본의 경우 에스테틱 인증제도 등 별도 관리체계 구비
  -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**미용기기를 지정·고시하고** 기기 사용 근거 마련
    - (1단계) 현장 수요가 높고 안전 우려가 적은 품목 우선 추진(10년)
    - (2단계) 현장 수요는 있으나 안전 확보가 필요한 품목은 별도 관리 시스템 마련 후 지정 추진('11년이후)
    - \* 대상 품목/지정 시기 등은 실태 조사,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('10년)
- [2] [학원 설립기준 현실화] 미용학원 설립기준을 전문 자격별로 세분화
  - (현행) 미용(1단계) ➡ (개선) 종합(헤어/피부) · 헤어미용 · 피부미용(3단계)
    - 기술 자격 세분화에 따른 피부 미용학원 개설 요건 현실화

 < 연행>
 < 개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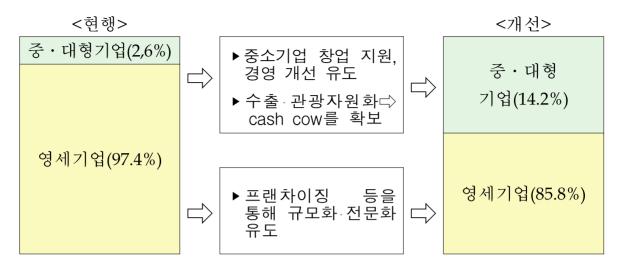
 해어 미용중심 (피부미용학원도 해어 미용 요건 충족)
 중합(헤어/피부) 헤어미용 피부 미용

- '10년까지 "**자격별 학원 설립기준 모델**" 개발·보급
  -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, 조례개정 유도
  - \*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은 『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』에 의해 시도 조례로 위임
- ③ [이중제재 정비] 과도한 이중 제재를 정비하여 영업자의 편의 도모
  - 면허증, 영업 신고증 미게시 등 영업 질서 위반 :
     (현행) 과태료・행정처분 ⇒ (개선) 행정 처분만 부과
    - \* 최근 3년간('06년~'08년) 과태료 부과건수 : 378건
    - \* 관련 조항 :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, 제11조 및 제22조
  - 대표자 성명 등 단순 신고의무 위반 :
     (현행) 징역・벌금 등 형벌 ⇒ (개선) 과태료로 전환
    - \* 관련 조항 :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
  - 폐업신고 의무 위반 :
     (현행) 과태료 ➡ (개선) 과태료 삭제, 세무서 폐업신고 확인으로
     직권폐업
    - \* 관련 조항 :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

#### (2) 뷰티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시스템 강화

- ◇ 중소기업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산업으로서 규모화・고도화 지원
  - 영세기업이 97% 이상을 차지하는 **자영업 위주 산업구조**를 **서비스업** 평균 수준으로 개선

#### 【 산업 구조 개선 방향】



- ① **(산업의 규모화·고도화)** 프랜차이즈 육성 등을 통한 **산업의 고도화·** 규모화 유도
  - (5인 이상 중소기업) 뷰티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
    - \* 중소기업정책자금 : '09년 기준 창업 초기 육성자금(1조원), 긴급경영안정자금 (1조 5천억원), 사업전환 자금(1,475억원), 지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금(3 천억) 등 약 5.9조원 규모
  - (영세기업) 창업 전·후에 대한 지원 강화로 『준비없는 창업 → 실패 → 재창업』의 악순환을 차단
    - (창업전) 창업시 경영 능력, 노하우 등을 습득할수 있도록 창업· 컨설팅·교육 프로그램 운영
    - \* 업종별로 성공한 기업인을 창업도우미로 활용, 서비스 경영기법 등 전수
    - (창업후)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, 소규모 개별 영세 사업자간 공동 브랜드 개발·운영을 지원하는 등 프랜차이즈화 유도
    - \* 브랜드 개발, 통합홈페이지 운영, 경영모델 제공 등
    - \*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『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』과 연계 추진 ('09.9.29 국경위 보고)

#### < 현행 >

- ▶사업장을 개별적· 분절적 운영
- ▶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**높은 가맹비 등 가입 어려움**

#### < 개선 >

- ▶개별 사업장 연계에 의한 **공동브랜드 개발**
- ▶사업장간 **상호 계약에** 의한 프랜차이즈 운영 ➡ 비용 최소화

#### < 효과 >

- ① **엄격한 품질관리**⇒ 소비자 신뢰제고
- ③ 가맹점 수 제한

  ⇒ 과잉진입 예방
- ② [우수 기업 발굴·육성] 서비스·기술 등이 우수한 기업을 "우수 미용기업"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
  - (선정 기준) 위생 수준이외에 서비스 질·직원 친절도·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·선정(기업신청에 의한 자율선정 방식)
    - \*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(~'09.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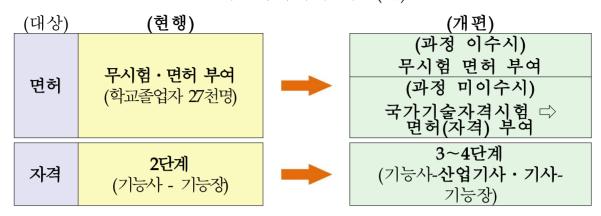
- (인센티브 제공)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우수업소 인증 로고 부여, 위생지도 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
  -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정 결과 공개, 기업간 경쟁 유도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
- ③ [인프라 확충] 뷰티 서비스 기업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 지원을 위한 "(가칭)뷰티산업 선진화센터"설치 추진
  - **창업·영업활동 지원**, 시장 조사·분석, R&D 투자, 외부자본 유치, 해외진출, 해외 관광객 유치·연계 등 지원
  - 관계부처(노동부, 중소기업청 등), 지자체・기업・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한 "one-stop 지원 체계" 구축
- ④ [제조업-서비스간 연계·육성] 화장품, 미용품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연계, 동반 성장 촉진
  - 고품질 미용 용품·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**R&D투자 확대**('10년, 60억)

- 매니큐어, 인조 손톱, 피부미용관련 전문화장품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료·용품 등의 산업 지원
- \* 피부미용제품 70%, 네일아트 제품 67%를 해외 수입에 의존('07년, 한국보건산업진흥원)
- 한방, 두피관리 등 기술적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**신기술** 개**발을 위한 R&D 지원**
- \* 한방화장품과 한국 고유 피부미용서비스, 탈모방지샴푸와 두피관리서비스 결합 등
- 서비스-제조업 등 관련부처·기관, 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『(가칭) 뷰티산업발전협의체』구성·운영
  - 관계부처간 정책·조정 연계, 현장애로 발굴·해결 등 지원

#### (3) 질높은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

- ◇ 면허 취득 요건 강화, 자격단계 세분화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
- ◇ 양성된 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와 함께 창업후 지속적인 재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정비
- ① **(면허·자격제도 개편)** 면허 취득요건 강화, 자격 단계 세분화 등 면허·자격 제도를 개편하여 **수준 높은 인력 양성 기반 확충** 
  - 일본·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(필수과목, 실습시간 등) 마련('10년)하는 등 취득요건 강화
    - \* 현재 관련법 개정 추진 중('09.8.7 국회제출)
    -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관련 면허(무시험) 부여
    - 시행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'11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검토
  - 현행 기능장-기능사 등 "2단계"의 자격단계에 기사-산업 기사 등을 신설, "3~4단계"로 확대 개편하는 등 자격단계 세분화 추진

<면허·자격체계 개편(안)>



- 자격 체계 정비를 위해 관련 부처(노동부, 교육과학기술부 등) 및 민간 전문가, 업계 대표 등으로 『자격제도 개선 TF』 구성·운영
- ② [취업지원 강화] 면허·기술자격 취득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구인난(업계)을 해소하고 구직 어려움(취업자 및 재취업자) 완화
  - "뷰티서비스 전문인력 DB"를 구축, 전문인력별 면허·자격 취득 현황, 재교육 및 경력 등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정보 제공
  - 취업박람회, 인력 장터 등을 개설하여 **구직자와 기업간 인력매칭 강화**
- ③ [전문인력 재교육 활성화] 전문 교육 기관 양성 및 전문인력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
  - 대학·뷰티서비스 기업 등과 연계,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교육 기관을 육성하여 "아시아권 국가의 교육 hub"로써의 위상 정립
    - \* 일본 『야미노 미용전문학교』, 영국 『비달사순』등 선진국의 경우 전문인력 재교육을 수출 상품으로 전략화
  - 경영자와 우수 종사자를 위한 『뷰티서비스 아카데미』 강좌 개설
    - ► CEO 양성 프로젝트 : 예비창업자, 여성 기업주 등을 대상으로 경영· 회계·세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 교육
    - ► 신기능인 100 프로젝트 : 매년 기술이나 창의성이 뛰어난 현장 종사자 100명을 선발,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
    - ► 상시교육 : 기술·창업·경영 등 전반에 대한 e-learning 시스템 구축

#### 2 │ 관광·수출 상품으로의 전략적 육성(Outbound 전략)

#### [1] 뷰티산업을 고수익 관광상품으로 육성

- ◇ 글로벌 홍보 강화를 통한 Korea Beauty 이미지 제고
- ◇ 명품관광 컨텐츠 개발, 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 등을 통해 뷰티 서비스를 매력있는 관광 컨텐츠로 육성
- ① (글로벌 홍보) Korea Beauty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글로벌 홍보 강화
  - Korea Beauty 브랜드(BI, Brand Identity)를 개발·홍보
    - 브랜드 디자인, 로고, 슬로건 등을 개발하여 간판 등에 활용
  - 뷰티관련 세계 대회, 박람회 등 유치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\* '11년 피부미용 CIDESCO(한국), OMC Hair World 2014('10.11 개최지 결정)
  - **뷰티서비스 종합정보포탈 오픈**, 외국어 서비스(영·중·일) 제공
    - 기술·인력·제도 등 뷰티서비스 현황, 뷰티 관광 정보, 우수 뷰티 서비스 기업 정보, 교육 기관·제도 등
- ② (관광 컨텐츠 발굴) 한국 고유의 장점을 살린 관광 컨텐츠 개발
  - 뷰티서비스 명장 등을 활용한 "명품 관광 패키지" 개발
    - \* 산업계 및 관광업계, 관계부처 등 협의체 구성 ⇨ 관련 상품 개발
  - 지자체, 민간 기업 등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"뷰티테마파크"를 교육·연구·체험 등이 결합된 뷰티 관광 명소로 육성
    - \* 프랑스(Herboretum), 일본(기업문화전시회)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·기업 주도로 뷰티 체험관을 조성, 관광자원으로 활용
  - 음식, 성형, 스파·휴식 등 관련 산업과 융·복합화를 촉진하여 건강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확대

- ② [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]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, "뷰티관광 선도 기업" 선정·육성
  - (선정 기준) 기업 의지·역량, 시설·인력 수준 등 종합적 고려 \* '10년 중 실태 조사 실시, 선정 기준 등 마련, '11년 이후 본격 선정 추진
  - (인센티브 제공) 공항·호텔·여행사 등 대상 가이드북 제작·배포,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구축, 외국어 설명자료 제공 등 홍보 지원
    -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, 종업원 대상 외국어 및 서비스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

#### (2) 뷰티서비스 기업·인력의 해외진출 확대

- ◇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보·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인력의 해외 진출 여건을 조성
- ① (해외투자 활성화)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보·행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
  - 보건산업수출지원센터(북경, 뉴욕, 싱가폴 등)의 지원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
    - \* (현행) 제약, 의료기기, 의료서비스, 화장품 ⇨ (확대) 뷰티서비스 등 포함
    - KOTRA, 국제의료마케팅 전문가, 서비스 기업 지원 센터('09.5 북경· 상해) 등과 연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
    - \* (국제의료마케팅 전문가) '09년 러시아, 미국(서부) ➡ '10년 동남아, 중국 ➡ '11년 몽골, 중동 ➡ '12년 유럽, 미국(동부) 등
    - 해외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간 정보공유, 기업애로해소 창구 등으로 활용('09년)
  - 중국·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 유망시장 진출 희망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강화

- 해외 진출 매뉴얼 작성·보급,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
- \* 맞춤형 정보 제공, 해외 시장 분석 및 Knowhow 전수, 해외 유망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단 파견, 각종 수출 지원펀드 등과 연계한 금융 지원 등
- ② [전문인력 해외진출 여건 조성] 국내 자격 국제적 인증 추진, 해외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뷰티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확대
  -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일본, 미국 등 대상 국내 자격(면허)상호 인증 추진('12년 이후)
    - 해외 자격공인협회 등을 활용한 **상호 자격 인증서 발급**, 국가간 MRA(Mutual Recognition Agreement)체결 등
    -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, **상호주의 원칙 강화**('09.9.30 국회제출)
      - ※ (현행) 국가기술자격법(제12조)에 의해 외국에서 상호 인증하거나 노동부 령이 정하는 외국 자격취득자의 국내 통용 인정
    - □ (개선) 노동부령이 정하는 외국자격 취득자 삭제, 외국에서 상호 인증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통용 인정
  - 해외 진출 희망자에 대한 교육·정보 제공·취업 연계 등 **종합적** 지위 체계 구축
    -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희망자에 대한 **해외 연수** 기회 제공
    - \* '09년 뷰티서비스 분야 300여명을 선발, 해외 연수 등 지원 예정
    - \* 필요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마련도 검토
  - 대상국별 고용동향, 자격·비자 등 각종 제도, 구인 현황 등 **각종** 취업정보 수집·제공(소식지 발간, e-mail 등을 통한 1:1정보 제공)
  - 화장품 기업·해외진출 뷰티서비스 기업 등과 연계, 기업 수요에 따른 "상시 matching 시스템" 운영
    - \* 해외진출 희망자를 중심으로 "해외 진출 인력 pool" 확보 및 관련 DB 구축
    - \* 일부 기업의 경우 피부미용사와 연계, 중국시장 동반 진출 ⇨ 화장품 및 서비스 매출 동반 상승 효과

## Ⅳ. 기대 효과

- Ⅱ 뷰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
  - 화장품, 관광, 의료 등 **타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** 극대화하고 서민·여성의 경제활동 안정에 기여

<뷰티서비스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추계>







- \* 시장규모: 현 성장 추세('05~'07년 : 19%성장) 유지 가정
- \* 생산유발효과 1,000억원당 1,840억원, 부가가치 유발효과 1,000억원당 920억원 가정('08년, 한국은행)
- 산업 구조의 영세화·양극화,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 확대 등에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최소화
- ②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
  - 뷰티서비스 산업에 대한 **종합적・체계적 비전과 방향 제시**함으 로써 **투자의 불확실성 해소**
  - 불합리한 규제·제도의 합리화, 지원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을 최소화
- ③ 서비스품질 평가, 전문인력 교육강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**서비스의** 질을 제고하여 소비자 만족도 제고

# ♡. 향후 추진 계획

- ① [기본 방향] 협의체 구성 등 행정 조치가 필요한 과제 및 처벌 조항 개선 등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는 연내 완료 추진(국회 제출 등)
  - 프랜차이즈 육성, 관광·수출 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는 '10년부터 본격 추진하되,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\*는 '11년 이후 완료 목표
    - \* 미용기기 품목 지정 · 고시, 면허 자격 제도 개편 등
  - 제도 개선, 시스템 확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지속 발굴・개선 추진

#### 2 세부 추진 계획

구분	추진과제	조치 사항	주관부서 (협조)	일정		
(1)	(1) 법제도 정비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완화					
1	미용기기에 대한 합리적인 체계 구축	법 개정 품목고시	복지부 (식약청)	′09.12 ′11~		
2	학원설립기준 현실화	조례개정	복지부 (교육부)	′10.12		
3	과도한 이중 제재 정비	법개정	복지부	'09.12		
(2)	(2) 뷰티산업 정책지원 시스템 강화					
4	프랜차이즈 육성 등 산업의 규모화 고도화	-	복지부 (중기청)	′10~		
5	우수 미용 서비스 기업 발굴 육성	-	복지부	′10~		
6	뷰티산업 인프라 확충	-	복지부	′11~		
7	제조업-서비스 연계 육성	-	복지부	′10~		

(3) 질 높은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					
8	면허자격제도 개편	법개정	복지부 (노동부)	′11~	
9	취업지원강화(전문 인력 DB 구축)	-	복지부 (노동부)	′11~	
10	전문 인력 재교육 활성화	-	복지부	′10~	
(4)	고수익 관광 상품 육성				
11)	뷰티산업 글로벌 홍보	-	복지부	′10~	
12	관광컨텐츠 발굴	-	복지부	′10~	
13	관광 선도기업 육성	-	복지부 (문광부)	′10~	
(5) 뷰티서비스 기업・인력 해외 진출 확대					
14)	해외투자활성화		복지부	′10~	
15)	전문 인력 해외진출 확대	-	복지부 (노동부)	′10~	